

구.하동역 일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4. 04.



하 동 군

목 차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1.2 계획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3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3
1.4 계획의 내용	4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9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	11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선정사유	12
2.3 대안의 선정	13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6
2.5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방법	19
2.6 주민 의견 수렴계획	20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2 계획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1.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근거

1.4 계획의 내용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초고령화 사회 구조 형성에 따른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실태에 대비하여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에너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이에 하동군이 2024년 2월경 선정되었음.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임.
-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통해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대하고 하동읍 내 부족한 생활SOC 확충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1.2 계획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가. 추진경위

- 2023. 07. : 구.하동역사 일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착수
- 2023. 12. 19 : 구.하동역사 일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4. 04. :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항목 결정내용 공개

나. 향후 추진계획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군의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완료
- 하동군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군 결정사항)
- 경상남도 결정 고시 및 하동군 지형도면 고시(도 결정사항)

1.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됨.

<표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개발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

1.4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구.하동역 일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계획수립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승인기관 : 경상남도 / 하동군
- 협의기관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 비파리 313번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25년
- 용도지역 변경(안)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55,189	-	55,189	100.0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소계	12,174	증) 21,396	33,570	60.8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21,077	21,077	38.2
		제2종일반주거지역	8,641	증) 3,852	12,493	22.6
		일반상업지역	3,533	감) 3,533	-	-
	녹지 지역	소계	43,015	감) 21,396	21,619	39.2
		자연녹지지역	42,149	감) 20,530	21,619	39.2
		생산녹지지역	866	감) 866	-	-

○ 용도지역 변경(안)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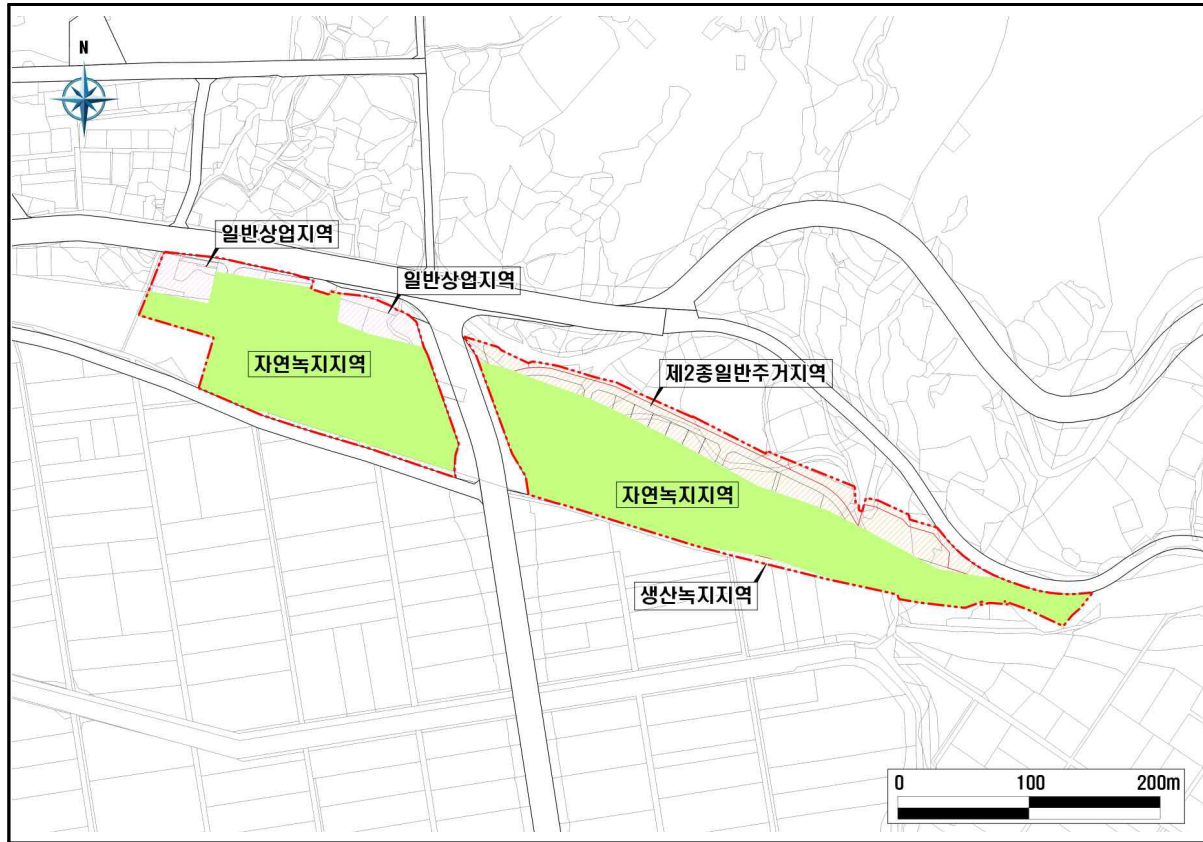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비파리 313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5,091	200% 이하	○ 하동역사 지구단위계획 내 사업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 주거지역	8,903	250% 이하	○ 하동역사 지구단위계획 내 사업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비파리 313-12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	200% 이하	○ 하동역사 지구단위계획 내 사업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863	100% 이하	○ 하동역사 지구단위계획 내 사업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비파리 360-2일원	일반상업지 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533	250% 이하	○ 하동역사 지구단위계획 내 사업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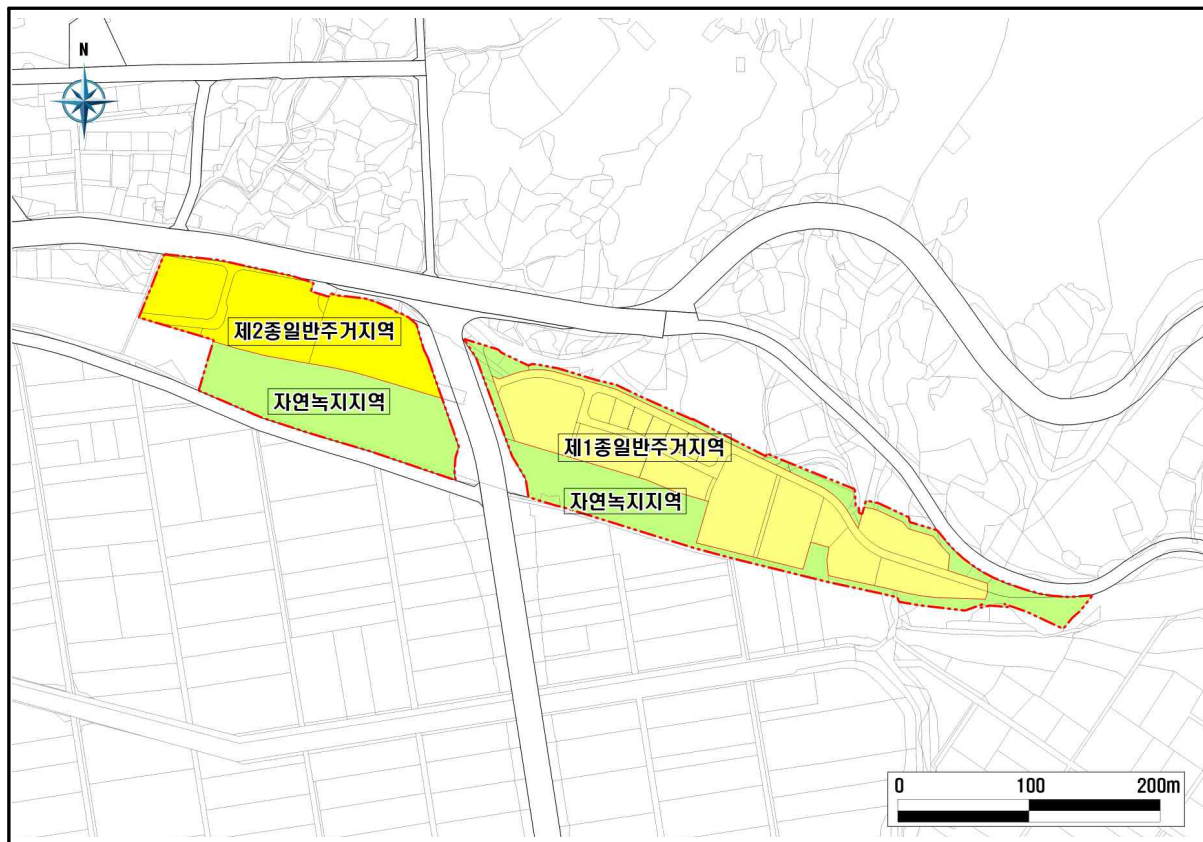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구)하동역사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동읍 비파리 313-7번지 일원	-	증) 55,189	55,18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 정 사 유	비고
신설	하동읍 비파리 313-7번지 일원	55,189	○ 주거지역내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인구 유발을 위한 농촌청년주택, 두드림센터, 아이 같이 보금자리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의 참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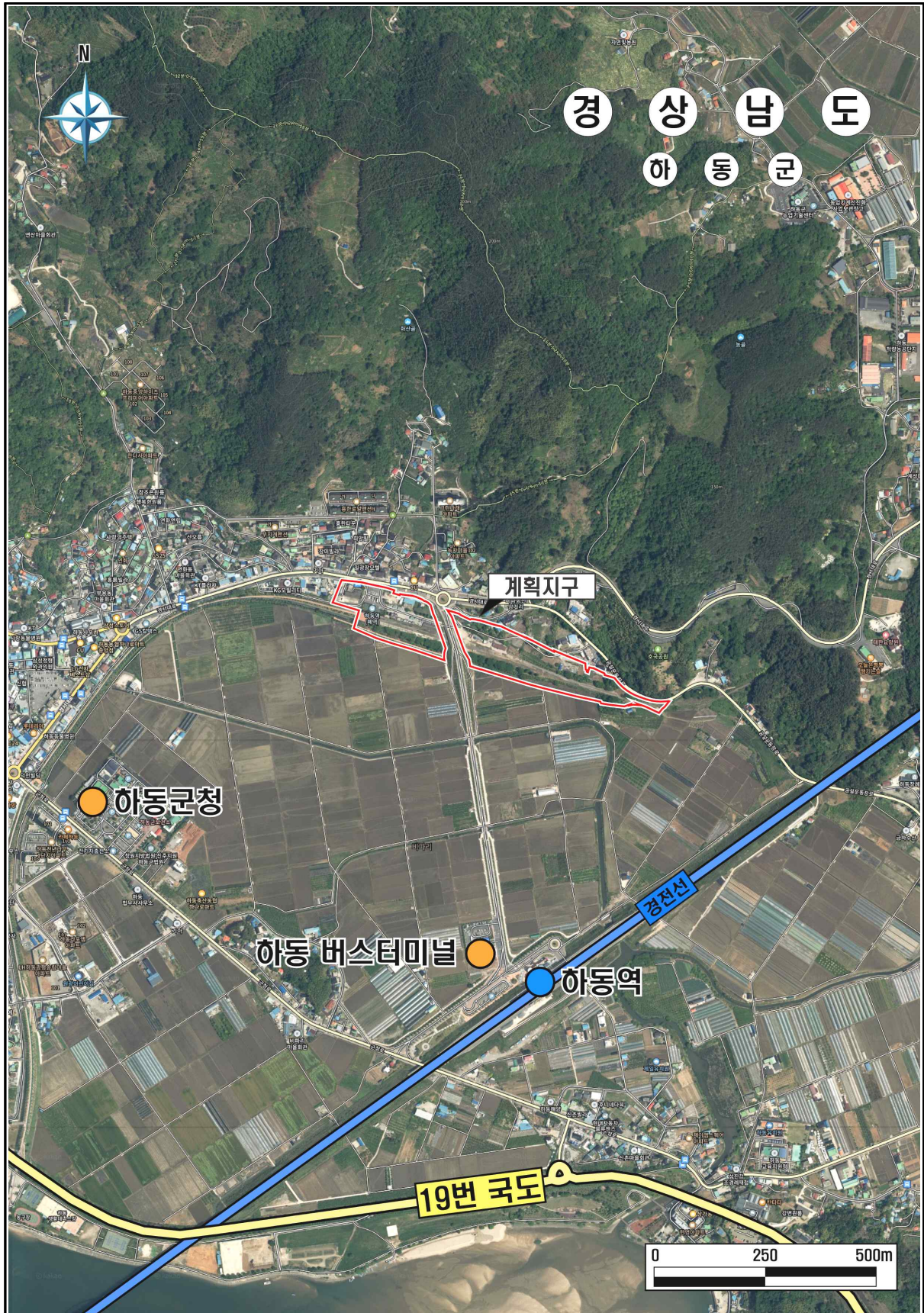
(그림 1.4-1) 군관리계획 결정도(당초)



(그림 1.4-2) 군관리계획 결정도(변경)



(그림 1.4-3)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4-4) 계획지구 위성사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선정사유

2.3 대안의 선정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5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방법

2.6 주민 의견 수렴계획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

-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으로 본 계획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본 계획의 규모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에 따라 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에 제시된 개발기본계획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표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주)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선정사유

- 본 개발기본계획의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3.04.13,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시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함.

<표 2.2-1> 평가항목 선정사유

평가항목				선정/ 제외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선 정	○ 상위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와 기본방향 부합성 확보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선 정	○ 대안 검토를 통하여 최적 계획(안) 선정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육상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 자산	선 정	○ 생물서식현황, 생태자연도, 각종 보호구역 분포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 지질	선 정	○ 지형·지질 현황 및 입지특성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예측
		자연경관	경관	선 정	○ 자연경관 현황 파악 ○ 계획 수립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검토
		수환경의 보전	수질	선 정	○ 계획시행에 따른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생활환 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토양	선 정	○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토양 등 현황 조사 ○ 기상 : 계획지구 인근 기상현황 파악 후 타 항목 예측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필요시) ○ 용도지역 결정(변경) 등의 계획으로 실질적인 토공사가 발생하지 않으나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 발생 → 항목별 환경 기준 부합여부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선 정	○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 파악

<표 2.2-1> 표 계속

평가항목				선정/ 제외	선정사유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선 정	○관할 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선 정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2.3 대안의 선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개발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대안 설정은 아래 <표 2.3-1>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 「수요·공급」, 「입지」의 대안종류를 선정·비교하여 최적의 대안(구상안)을 선정함.

<표 2.3-1> 대안의 종류별 선정방법 및 선정여부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여부 및 미선정사유
계획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 (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계획의 수립, 미수립에 따른 비교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본 개발기본계획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계획에 대해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비교·검토함
입지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본 계획의 구역 선정에 대안을 비교하여 선정함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본 계획은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시기·순서의 대안은 없는 것으로 계획함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3.04.13,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가. 계획비교 대안

- 본 대안의 선정을 위해 금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 대안으로 2안을 선정하였음.

<표 2.3-2>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대안종류	대안 1	대안 2
	미수립(No Action)	계획수립(Action)
내 용	○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장 점	○ 계획 미수립에 따라 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지형변화 및 환경영향 발생하지 않음	○ 체계적인 관리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단 점	○ 적정 계획의 미수립으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악영향 ○ 불합리한 토지이용체계를 유입함으로써 지속적인 민원 발생 예상	○ 추후 개별 개발계획에 따른 지형변화 및 환경영향 발생
선정안		○
선정 사유	○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대안 2(Action)을 선정하였음.	

나. 수요·공급비교 대안

- 본 대안의 선정을 위해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비교·검토하였으며, 대안으로 2안을 선정하였음.

<표 2.3-3> 수요·공급 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대안종류	대안 1(단독주택)	대안 2(연립주택)
장 점	○ 단독주택 면적을 확보하여 밀집도 완화 ○ 개별 활동공간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생활 가능 ○ 광장 조성으로 휴식·소통공간 확보	○ 1안 대비 작은 공간을 배분하여 청년을 위한 생활공간 제공함에 따라 사업성 제고 ○ 면적 대비 수용인구 확보를 위해 지방도시의 청년인구 유입에 유리 ○ 공원을 남측에 배치하여 주거 쾌적성 증대

<표 2.3-3> 표 계속

대안종류	대안 1(단독주택)	대안 2(연립주택)
단 점	○ 단독주택 위주로 조성시 2안 대비 부지 추가 확보 필요, 공급 및 유지 등에 소요 되는 부담 증가 ○ 농촌 청년과의 다양한 협업 활동효과 저하	○ 청년인구 유입에 따른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필요 예상 ○ 세대간, 지역주민간 갈등 발생 우려
선정안		○
선정 사유	○ 지방 군단위 소규모 도심지역에 청년인구 공급을 유도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대안2를 선정하였음.	

다. 입지비교 대안

- 본 계획지구의 계획 수립시 입지 대안(토지이용계획)을 비교·검토하였으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2안을 선정하였음.

<표 2.3-4> 입지 비교에 따른 대안검토

대안종류	대안 1				대안 2			
토지이용 계획표	구 분		면적(m ²)	비율(%)	구 분		면적(m ²)	비율(%)
	합 계		55,189	100.0	합 계		55,189	100.0
	주거 시설 용지	소계	23,362	42.3	주거 시설 용지	소계	26,512	48.0
		단독주택	11,988	21.7		단독주택	4,452	8.1
		연립주택	6,994	12.7		연립주택	17,680	32.0
		근린생활시설	4,380	7.9		근린생활시설	4,380	7.9
	보육시설		993	1.8	보육시설		595	1.1
	커뮤니티시설		679	1.2	문화시설		1,146	2.1
	문화시설		1,266	2.3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6,936	48.8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8,889	52.4		공원	8,715	15.8
		공원	3,602	6.5		녹지	11,974	21.7
		녹지	10,955	19.9		주차장	358	0.6
		광장	2,182	4.0		보행자도로	330	0.6
		보행자도로	1,205	2.2		도로	5,559	10.1
		도로	10,945	19.8				

<표 2.4-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사유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상위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와 기본방향 부합성 확보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 계획비교, 수요·공급, 입지조정 대안 검토를 통한 계획수립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육상 동·식물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식물상 100m 이내 - 동물상 300m 이내	○ 계획시행시 육상동·식물상 영향 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 자산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 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 지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수립으로 인한 생태축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변화가 예상 되는 지역
		자연경관	경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수립으로 인한 경관 보전 용도지역 영향 및 경관의 변화 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수환경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계획지구 인근 기상대	○ 계획지구 인근 기상현황 파악
			대 기 질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300m 이내)	○ 계획시행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온실가스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배출영향 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300m 이내)	○ 계획시행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토양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토양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지구 인근에 위치한 환경 기초시설 현황 파악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그림 2.4-1) 대상지역 설정도

2.5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방법

-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항목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될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2.5-1>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개발기본계획 ○ 대안 및 입지대안	○ 계획비교, 수요·공급, 입지 대안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 문헌조사(생태자연도, 보호구역 등) ○ 육상동·식물상 조사 및 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지형 현황 파악
		자연경관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한 자연 경관 현황 파악 ○ 경관영향 검토
		수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 인근 수계 현황 조사 후 수질 관련 보호구역 저촉여부 검토 ○ 수질오염총량지역 해당 검토 ○ 계획지구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 대기질
			○ 온실가스
			○ 소음·진동
			○ 토양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문헌조사를 통해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과의 연계성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계획수립시 입지의 적합성 검토

2.6 주민 의견 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본 계획은 계획면적 6만제곱미터 이하임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는 생략하였으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할 계획임.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또는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1) 공람·공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며, 20일 이상 40일 내 공람장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
- 또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공람의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포함) 게시

2) 주민설명회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내 1회 개최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에 의거,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를 하동군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4) 타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계획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에 의거, 타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가 생략가능함.

<표 2.6-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근거

구 분	내 용
환경영향평가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2.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구 분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